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05

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김용태·조경태·조은희

이종배 · 조지연 · 주호영

김위상 • 박충권 • 서천호

박덕흠 • 김성원 • 임이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,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 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.

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,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.

또한, 법률상 '다문화학생'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,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.

이에 시·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, '이주배경학생'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28조의2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"다문화학생등"을 각각 "이주 배경학생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2(<u>다문화학생등</u> 에 대한	제28조의2(<u>이주배경학생등</u> 에 대
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	한 교육 지원) ①
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	
따른 아동 또는 학생(이하 " <u>다</u>	
<u>문화학생등</u> "이라 한다)의 동등	<u>이주배경학생등</u>
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	
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	
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학교의 장은 <u>다문화학생등</u>	③ <u>이주배경학생</u>
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	<u>드</u>
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	
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	
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	
여 노력하여야 한다.	
④ 교육감은 <u>다문화학생등</u> 의	④이주배경학생등
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	
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・운	
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	
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	
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	
을 지원할 수 있다.	

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<u>다</u> 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 치·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<신 설>

5				<u>-0]</u>
<u>주비</u>	배경학생등			
			-,	
	- 0 -1 0	-1 63 61	. 1 -1	~ 1

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등 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